

#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안내

(자료제공: 공공의료과 ☎ 033-249-2923)

##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·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!

- ❖ 지원대상 : 난임진단서를 받은 난임부부  
※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
- ❖ 지원기준: 소득수준·연령 무관 도내 거주 난임부부
- ❖ 주요내용: ① (지원기준 확대) 부부당 25회 → **출산당 25회로 확대**  
② (연령구분 폐지) 45세 이상 **본인부담률 30%로 인하**  
③ 공난포,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인 시술중단의 경우에도 지원

구 분		지원금액
체외수정(1~20회)	신선배아	최대 110만원
	동결배아	최대 50만원
인공수정(1~5회)		최대 30만원

※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 지급(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)

- ❖ 시행시기: 2024. 11. 1.
- ❖ 신청방법: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등)  
※ 사실혼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(온라인 신청불가)

지원신청	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	지원결정통지서 발급	난임 시술
신청자 → 보건소	보건소	보건소 → 신청자	신청자 → 의료기관

- ❖ 문의사항: 부인 거주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
**참고****난임시술 의료기관**

○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(강원특별자치도 내 12개소)

시군	기관명	소재지	시술 방법
춘천	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	춘천시 온의동123-29	체외수정
춘천	강원대학교병원	춘천시 백령로 156	
원주	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	원주시 일산로 20	
원주	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	원주시 장미공원길 43-6	
강릉	아이앤맘산부인과의원	강릉시 옥가로 21, 4,5층	
춘천	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	춘천시 온의동123-29	
춘천	호산부인과	춘천시 석사동 796-4	인공수정
춘천	강원대학교병원	춘천시 백령로 156	
원주	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	원주시 일산로 20	
원주	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	원주시 장미공원길 43-6	
강릉	세가온산부인과의원	강릉시 교2동 723-7	
강릉	아이앤맘산부인과의원	강릉시 옥가로 21, 4.5층	

# 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」 안내 홍보

(자료제공: 보건식품안전과 ☎ 033-249-2962)



## 이·맘·때!

이제,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!  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 시작됩니다
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

### 서비스 대상자
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을 통해 의뢰된 자

###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7.1.~12.31.
-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
- 복지로 온라인 신청(\*24.10월 예정)

### 문의처

-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 / 🌐 [www.129.go.kr](http://www.129.go.kr))

### 서비스 내용

-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(바우처)  
- 1: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
-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-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
\*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(<http://www.socialservice.or.kr>)

### 서비스 가격

- 서비스 단가(1회당) : 1급 유형 8만원, 2급 유형 7만원
-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
- 정부지원금 : 392,000원 ~ 640,000원(총 8회 기준)  
- 본인부담금 : 면제 ~ 192,000원(총 8회 기준)



# 가을철 산불예방(11.1.~12.15.) 안내

(자료제공: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☎ 033-649-8518)

**강원산불방지센터**  
특별자치도

산불조심

강원특별자치도  
산불감시원

**적 벨 발**

산림 100m이내 불법소각시  
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

실수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 
3년이하의 징역 또는  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매형 / 산불감시원  
나 매인데, 내 눈으로 감시한다

# 안전하고 맛있는, 강원먹거리를 위한 농수특산물 인증제도

(자료제공: 농산물유통과 ☎ 033-249-2622)



## ✓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란?

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, 생산·저장·가공·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, 제품에 부착된 엄지척 인증마크를 통해 인증 제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<인증마크 도안>



## ✓ 왜 도지사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할까요?

- 1 강원특별자치도산 농·임·축·수산물 사용으로 푸드마일리지\* 감소  
\* 농축수산물이 생산된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로 푸드마일리지 낮을수록 더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의미
- 2 믿을 수 있는 다(多)단계 인증 절차  
- 서류 심사(1차 시군, 2차 도) 및 현장확인을 통한 철저한 심사, 도내산 원료 사용 등 사후관리(반기)
- 3 도지사인증마크 제품 소비로 도내 농업 및 식품기업 동반성장 촉진



## ✓ 품목별 주요 인증제품 ※ 도내 287개 업체('24.10.기준)

- 농산물·농산가공품: 사과, 파프리카, 토마토, 들기름, 된장, 와인 등
- 임산물·임산가공품: 산양삼, 표고버섯, 명이나물절임, 오미자즙 등
- 축산물·축산가공품: 돼지고기, 소고기, 닭고기, 치즈, 꿀, 계란 등
- 수산물·수산가공품: 명태, 장어, 문어, 황태채, 황태포 등



## ✓ 구입처: 각 시군 농산물 직거래 마켓 및 농수특산물 진품센터(서울)

# 인플루엔자 · 코로나19 동시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 !

(자료제공: 감염병관리과 ☎ 033-249-4613)



65세 이상 어르신

# 인플루엔자 · 코로나19 동시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!



**지원대상**

65세 이상 어르신 (1959.12.31. 이전 출생자)

**접종기관**

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\*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(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)

**지원기간**

- 75세 이상 (1949.12.31. 이전 출생자) | 2024.10.11.(금) ~ 2025.4.30.(수)
- 70 ~ 74세 (1950.1.1.~1954.12.31. 출생자) | 2024.10.15.(화) ~ 2025.4.30.(수)
- 65 ~ 69세 (1955.1.1.~1959.12.31. 출생자) | 2024.10.18.(금) ~ 2025.4.30.(수)

의료기관  
방문 시  
지켜주세요

1

건강상태가 좋은 날  
예방접종  
하기

2

보호자와 접종대상자  
모두 마스크  
착용

3

손소독 등  
개인위생 수칙  
준수

4

접종 후 현장에서  
20~30분 머무르며  
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



1 예방접종도우미  
바로가기



# 세계인권선언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

(자료제공: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☎ 033-813-9935)

## □ 세계인권선언문

**세계인권선언**  
-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-

**제1조**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, 존엄하며, 평등하다.

**제2조** 모든 사람은 인종, 피부색, 성, 언어,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.

**제3조**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, 자유를 누릴 권리,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.

**제4조**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.

**제5조**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,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.

**제6조**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.

**제7조**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,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
**제8조**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.

**제9조**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, 구금,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.

**제10조**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한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**제11조**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,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.

**제12조** 어느 누구도 사생활, 가족, 주택, 통신에 대해 간섭받지 않고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 공격받지 않는다.

**제13조** 모든 사람은 국가 내에서 이진과 거주에 자유가 있고, 출국하고 귀국할 권리가 있다.

**제14조**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.

**제15조**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, 함부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.

**제16조** 성인 남녀는 인종, 국적, 종교의 제한 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, 결혼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.

**제17조**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.

**제18조** 모든 사람은 사상, 양심,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.

**제19조**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.

**제20조**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.

**제21조**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격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**제22조**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**제23조**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, 직업을 선택할 권리,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,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
**제24조**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.

**제25조** 모든 사람은 식량, 의복, 주택, 의료, 사회복지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.

**제26조**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, 초등기초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.

**제27조**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, 예술을 즐기며,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.

**제28조**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.

**제29조**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.

**제30조**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지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.